

北韓의 外國人投資關係法에 관한 研究¹⁾

유영일
법학과

(요 약)

북한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관련법규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은 최근의 여러 입법을 통하여 상당히 체계화, 구체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법규는 아직은 입법목적만이 앞설 뿐 여러가지 점에서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자본을 유치함에 있어서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정책이 서방측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되, 이로 인한 체제동요를 최소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오는 한계도 보인다. 앞으로 북한이 외국자본의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완비하고, 동시에 기존의 법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입법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투자유형별로 나누어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의 내용을 각각 살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북경협시 예상되는 법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A STUDY ON THE NORTH KOREA'S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S

You, Young Ihl
Dept. of Law

(Abstract)

1) 이 논문은 1994년 11월 23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북한의 산업정책의 현황과 변화전망'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North Korea is doing her best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as a means of solution for economic difficulties. To support this policy legally, North Korea is accelerating to enact related laws especially since 1992. As a result it is true that North Korea's foreign capital inducement laws(FCILs) became systematic and concrete considerably with recent several laws. However these laws have several defects and loopholes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cs. This results partly from the fact that North Korea's basic policy has dual objects in inviting foreign investment. One is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positively, and the other is to minimize unrest of the nation's structure. To succeed in inviting foreign capital, North Korea is required to prepare regulations necessary for enforcement of the FCILs in details, and to make up the defects and loopholes in the current laws. The writer surveys firstly the legislation system of the North Korea's FCILs, and secondly examines each law according to the investment typ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 writer examines the legal problems expected in South - 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suggests a countermeasure.

I. 서 론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민족자립경제의 건설을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로 채택하여 왔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원조 및 차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관계만을 유지해 오는 등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 대외무역의 부진과 국제수지의 악화, 산업구조의 불균형, 경영관리의 경직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경제침체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이들 법제에는 그들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기본정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서방측의 대북투자를 적극 유치하되 이로 인한 체제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형태 및 개방지역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이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최초로 제정한 법은 1984년의 합영법이지만, 동법은 결과적으로 서방측의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실패하였다. 이에 북한은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외국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²⁾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간접투자에 가까운 합작형태를 새로 도입함과 동시에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제한된 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인의 단독투자기업까지를 허용하는 한편 토지임대 등에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펴는 것이었다.³⁾ 그 밖에 토지이용, 노동력의 수급, 외환 및 조세, 출입국절차 등에 관한 개별법들

2) 북한에서는 이미 1973년에 제1차 개방시도가 있었으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그 후 1984년부터 제2차 개방시도로 재일조총련 기업과의 합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1990년대에 들어 제3차 개방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는 종래에 비하여 획기적인 것으로 개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2년 헌법개정을 비롯 많은 개방관련법률과 규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나진, 선봉지역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된 것도 이 시기에 들어서이다.

3) 구합영법과 새외국인투자법과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1994), 212 - 215면 참조.

이 속속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은 투자유치 의도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들 외국인투자관계법은 그 내용을 볼 때 대부분이 중국의 법제를 모방한 것이면서도 오히려 중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규정한 것이 많고, 또한 규정의 산만함과 주요내용의 흠결, 구체성의 결여 등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다.⁴⁾ 이와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개방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북한당국의 정책의지가 확고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과, 합작형태가 새로 도입되어 서방측의 관심을 끌만한 유인을 갖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의 운영으로 대북투자의 성공여부를 실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북한측이 경제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거기에서 어느정도의 성과와 자신감을 갖게 될 경우, 합영기업의 적극유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추가지정 등 점진적인 개방확대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은 1993년 하반기 북핵문제로 한 때 주춤했으나, 북미간의 핵협상이 최근 제네바에서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대북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국내기업간에는 일부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4년 11월 8일 1단계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직접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대북투자의 전제조건으로써 사전에 북한의 법적 투자환경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남북한간의 교역에서 남기지연, 품질불량 등 상당수의 상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입법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투자유형별로 나누어 이를 규제하는 각각의 법률들에 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입법체계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제정년도별로 나열하면, 합영법(1984.9.8), 합영회사소득세법 및 외국인소득세법(1985.3.7),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1992.10.5),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1993.1.31), 토지임대법(1993.10.27), 외국투자은행법(1993.11.24), 개정합영법(1994.1.20) 등의 순으로 된다. 이 가운데 합영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기업법은 그 하위법령으로 세칙내지 시행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에 공동되는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또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그 하위법령으로써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및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은 모법의 규제대상 가운데 특정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률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화시켜 본다면 외국인투자법은 일반법내지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은 개개의 투자유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 관련세법과 외화관계법 및 토지임대법 등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특히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에서는 종전

4) 이는 중국이 체계개혁적인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체제유지적인 외자유치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오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북한연구 1993년 겨울호, 119면). 양국의 외국인투자법제간의 비교에 관해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위의 책, 218 - 227면 참조.

5) 한국경제신문 1994.11.19, 8면.

의 세목 등을 망라한 새로운 조세체계를 규정하고, 나아가 그 시행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영회사채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은 북한의 회계기준으로써 특히 이윤산정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법령은 합영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다른 유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은 사회주의노동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상의 노동관계조항에 대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일정한 지역을 설정하여 다양한 특혜를 규정한 점에 특징이 있다.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적용되는 출입국관리규정이지만, 북한의 일반적인 출입국관련법규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그 밖에도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 등도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적용된다.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법제로 파악할 수도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관계법을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에는 민법, 노동관계법, 환경관계법, 토지관계법, 사회간접자본이용관계법, 공업소유권관계법, 분쟁해결관계법, 사회주의상업법, 도시경영법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⁶⁾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투자관계법 가운데는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제정된 법률들도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고 하위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이 많다. 또한 법령 상호간의 체계도 산만하여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III. 유형별 외국인투자관계법

1. 외국인투자법

(1) 개관

1992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이 법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절차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하여(제2조), 동법이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투자유형에 따라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동법에 의하면 합영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하고, 합작기업은 북한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제2조).

이처럼 투자유형을 다양화한 것은 외국투자가에게 자본참여 형태의 투자나 100% 단독투자 등 다양한 투자형태를 제시하여 선택권을 주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경제개방에 따른 체제동요를 우려하여 개방의 경제외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데 보다

6) 위 법들의 개략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최중고, 북한법의 최근동향과 특징, 북한연구 1993년 겨울호 참조.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합작기업의 경우 외국측 투자가는 자본은 제공하되 경영에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주의적 기업경영방식을 당해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으며,⁷⁾ 합영기업은 북한의 모든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법제운영 과정에서 친북한계 해외교포를 제외하고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의 기업설립만을 허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법은 총 2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주요내용

1) 기본원칙

동법의 입법목적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는데 있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제4조).

2) 투자당사자

동법에서는 외국측 투자당사자로서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을 들고, 그 밖에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투자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여기서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의미안에 재일, 재미교포 이외에 남한주민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외국인투자관계법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1984년 합영법으로, 동법 제5조에서는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의 처음 의도는 재일, 재미교포 등만을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헌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공화국은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북한헌법 제9조 참조), 그렇다면 남한주민은 공화국의 영역안에 거주하므로 외국인투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 합영법 및 북한헌법상의 표현과 구별하고 있는 점(북한헌법 제15조 참조), 북한헌법 제16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사실상 통치권이 미치는 북한지역 거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공화국의 영역에는 남한지역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⁸⁾ 특히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과정을 비롯하여 그동안 보여 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현재 우리 기업의 대북투자를 적극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 조항의 해석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외국인투자법에서 남한주민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경우 대만동포투자장려에 관한규정을 따로 제정한 것과는 대조를 보인다.⁹⁾ 한편 북한측 당사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합영법과 합작법에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합작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측 당사자가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투자대상

7) 북한은 1991년 나진, 선봉지역 621 평방 킬로미터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였다.

8)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26면 ; 권오승, 앞의 논문, 102면.

9) 윤대성,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 경남법학 제9집(1993), 282면 주 (50).

동법에서는 외국인투자대상을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 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으로 열거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그러므로 특별한 업종제한은 없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된다(제11조). 또한 동법에서는 투자장려부문과 장려조치의 내용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데, 투자장려대상은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이다(제7조). 이들에 대한 장려조치로써는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을 예시하고 있다(제8조).¹¹⁾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의 보장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②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소득세율도 다른 기업보다 인하여 결산이윤의 14%로 하고 ③ 기업창설 및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간소하게 한 것 등이다(제9조, 제10조).¹²⁾

한편 합영법에서는 장려부문 이외에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과 하는 합영기업과 일정한 지역에 창설된 합영기업에 대하여도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등의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는 합영기업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해외교포의 대부투자에 대한 우대를 규정한 것으로써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합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합영법시행세칙에서는 대규모 장기투자사업에 대하여 합영기간 연장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제90조).

4) 투자의 목적물

투자목적물은 화폐, 현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이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제12조). 그러나 북한측에서 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및 기준과 외국측에서 투자할 공업소유권, 노우하우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나아가 제3자에 의한 평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¹³⁾

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지위

합작기업, 합영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법적지위는 북한의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4조). 북한 민법에서는 법인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지 않고,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라는 개념안에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포함시키고, 이들에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민법 제11조, 제12조). 그러므로 이들 기업은 일용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4) 이들 기업이 법인의 지위를 갖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법인의 내부조직이다.

10) 위의 논문, 283면.

11)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12조, 제15조 ; 토지임대법 제30조, 제33조 ;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38조, 제39조 참조.

12) 관세면제에 관해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절차의 간소화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23조, 제41조와 자유경제무역지대의국인출입규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13) 권오승, 앞의 논문, 107면 ; 윤대성, 앞의 논문, 84면.

14) 북한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서 펴낸 법학사전에 의하면 북한에서 사실상 존재하는 법인격있는 단체에는 국가적 법인(여기에는 예산제 국가기관, 독립채산제 기업소 등이 포함된다), 협동단체법인, 사회단체

북한 민법은 우리와 달리 법인의 내부기관과 그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4조).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기업에 대하여 법인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민법상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합병법이 합병기업의 내부조직으로써 이사회와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기타 관리성원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해석상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에 관해서는 민법 제1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합병회사의 경우 회사의 개념도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법에서는 합병당사자는 합병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안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하고(제4조), 합병법시행세칙에서는 합병회사가 유한책임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과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에서는 모두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민법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자신이 민사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제15조), 합작기업과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이나 외국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북한 또는 외국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제13조). 지사, 대표부 및 출장소의 설치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범위를 지역적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의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출자에 의한 별도의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자회사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적인 설립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¹⁶⁾ 반면 기업연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다(제14조).

6) 토지사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에 관해서는 장려부문에 대한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 이외에 외국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차할 수 있고, 임차한 토지는 임차기간 동안은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제15조). 북한의 토지소유관계는 헌법과 민법 및 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토지는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다(헌법 제20조내지 제22조, 민법 제2편, 토지법 제9조내지 제12조).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한 토지를 국가나 협동단체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며, 북한측 당사자가 국가 또는 협동단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기업소일 경우에는 투자목적물로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 및 상속의 경우에도 토지임차권 내지 사용권의 양도 및 상속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토지임대법에서는 토지임차자의 권리로서 토지이용권을 인정하고 임대기간, 임대절차,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임대료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 등이 있고, 기업소에는 국가기업소,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와 같은 농촌관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광정/도시경계/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도매상인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 등이 있으며, 기관에는 국가기관, 수매기관, 저금기관, 보험기관, 은행기관, 재판기관, 중재기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는다(민법 제2조).

15)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30면.

16) 위의 책, 30면.

7) 고용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서 정부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북한주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채용과 해고는 해당 노동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제16조). 이처럼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의 채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북한주민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는 합영법과 외국인기업법에서 직업동맹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후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이 제정된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에 우선하여 이것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합영법시행세칙 제6장과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제6장에서는 노력관리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고용관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8) 납세의무 등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제7조). 이에 대해서는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제18조).

9)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 또는 몰수할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외국투자가와 협의없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그리고 외국투자가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인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을 외화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20조). 국유화 등의 제한규정은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나, 국유화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과 보상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17) 경영비밀보장 역시 모든 기업이 국유 또는 협동단체 소유인 사회주의 국가의 속성에 비추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나 송금보장에 관해서는 기업이윤 이외에 청산후 잔여 재산까지를 송금대상에 포함시킨 점과 외화관리법의 제정으로 이를 좀더 구체화시킨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0) 분쟁해결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차이는 1차적으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로써 해결할 수 없는 분쟁사건은 2차적으로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제22조). 민사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중재절차는 해당법규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17) 권오승, 앞의 논문, 104면 ; 윤대성, 앞의 논문, 282면.

2. 합작법

(1) 개관

합작은 북한이 고안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형태이다.¹⁸⁾ 이는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써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제15조) 우리측에 처음 알려졌으며, 현재는 북한 헌법에서도 합영과 합작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제37조). 합작기업의 특징은 경영권이 북한측 당사자에게 전속되고 외국측 당사자는 경영문제에 대하여 자문내지 협의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동법 제6조 참조). 외국측 당사자는 투자에 대한 대가로써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지분을 상환받거나 이윤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지분의 상환형태는 일종의 차관공여내지 대부투자의 방식으로써 직접투자라 볼 수 없고, 이윤분배 형태도 이윤이 없으면 아무런 투자이익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측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작투자의 거래유형으로는, ① 자본주의 방식의 차관공여내지 대부투자나 간접투자 ② 설비나 원료를 제공하고 제품을 받는 임가공방식의 거래 ③ 기술수출이나 마케팅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거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는 제조업 부문은 물론 자원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합작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법에서 합작투자를 합영투자나 외국인 단독투자보다 앞에 내세운 것은 당분간 합작투자 방식을 위주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진다.¹⁹⁾ 북한은 합작투자가 외국측 당사자가 북한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식 기업논리가 북한에 침투하여 주체사상의 동요 등 체제유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설비를 도입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과거의 합영경험이나 최근 우리기업과의 접촉을 통하여 현재의 북한정세나 경제발전단계로 보아 합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가공방식은 유회환방식 뿐만아니라 무환방식내지 제품상환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채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합작법에서 출자지분의 상환이나 이윤분배는 제품상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도 무환방식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²⁰⁾ 합작법은 총 2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주요내용

1) 투자대상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관광, 봉사부문에다 조직할 수 있다(제3조). 이는 합작투자 유치의 목적이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진흥과 산업기술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기술도입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관광 및 봉사부문을 들고 있는 것은 당장 착수할 수 있고 또한 외화가득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작투자 장려부문은 외국인투자법의 경우와 같다.

18) 합작투자는 북한이 새로이 고안해 낸 독특한 방식으로써 중국의 합작경영기업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74면 참조).

19) 위의 책, 74면.

20) 위의 책, 76면.

2) 합작당사자

합작당사자로는 공화국의 영역밖에 있는 조선동포만을 들고 있다(제5조). 굳이 조선동포를 명시한 것은 재일, 재미교포 이외에 우리측 기업을 끌어들여 서방국가의 합작투자를 촉진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3) 투자절차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자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합작승인후에는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6조, 제8조). 합작신청서에는 계약서 이외에 경제기술타산서를 비롯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작신청에 대한 승인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이며(제7조), 합작기업 등록기간은 승인후 30일이다. 합작기업 창설일은 등록일이다. 업종변경은 원래의 승인기관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9조), 합작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10조).

4) 고용관계

합작기업의 고용관계는 다른 투자유형보다 폐쇄적으로 기술도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의 채용이 허용된다. 즉,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투자자측의 기술자를 채용하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다(제11조). 합작기업에도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이 적용되는 물론이다(동규정 제3조).

5) 원자재수입 및 수출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 바에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사용할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제12조). 이는 합작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는 1차적으로 북한산으로 충당하고자 할 것이나, 수출을 위하여 원자재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생산제품의 판매에 관해서는 내수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합영기업이나 외국기업과는 달리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6) 투자지분의 상환 및 이윤분배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는 국제적 태환성이 있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경우에 따라 원자재의 구상무역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합작법에서는 합작제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13조). 또한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이윤분배의무를 이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외국투자자는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을 북한의 외화관리 관련법규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제15조).

7) 경영활동

합작법은 합작기업의 생산 및 경영을 북한측 당사자가 전담하게 하면서, 이와 별도로 합작당사자들이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하여 신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 등 합작기업 경영상의 주요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그러므로 외국투자자는 합작기업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공동협의기구의 성격은 단순한 경영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합작기업의 내부조직에 관해서는 외

국인투자법이나 합작법에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조직할 수 있다고 본다.²¹⁾ 다만, 합작기업은 북한측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투자형태이며, 북한의 국영기업이나 협동단체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원리로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장당위원회(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생산핵심당원으로 구성) 조직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²²⁾ 결산은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하고, 합작기업은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이 북한측에 전속되어 있는 만큼 결산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합작법에서는 결산기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결산담당기관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결산방법도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앞으로 회계관련법규의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 납세의무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제18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에 의한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일 것으로 추정되나 과세요건 및 납부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다. 합작기업은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제2조).

9) 해산

합작법에서는 합작당사자 일방의 합작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합작기업의 해산과 합작계약에서 정한 합작기간의 종료로 이유로 한 합작의 종료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0조). 해산사유는 합작당사자 일방이 합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이며, 해산절차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을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²³⁾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부담하며(제19조), 그 밖에 채권, 채무의 청산 및 등록취소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20조). 합작의 종료에 있어서도 채권, 채무의 청산 및 등록취소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의 종료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간종료 6개월 이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조).

10) 분쟁해결

합작기업의 분쟁은 그 유형이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법의 경우와 같다(제21조 참조).

21) 위의 책, 79면.

22) 대안의 사업체계란 대안전기공장에서 김일성이 지도하였다고 하는 경영관리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기본공자는 군중노선에 입각하여 공장관리를 지배인 단독관리체계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주도에 의한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에 관하여는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법제자료 157집(1991), 117 - 118면, 483 - 484면 참조.

23) 그러므로 북한측 당사자가 합작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더라도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하지 않으면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없게 된다(권오승, 앞의 논문, 106면).

3. 합병법

(1) 개관

합병법은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 1984년 최초로 제정한 법이다.²⁴⁾ 그러나 엄격한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서 합병방식을 먼저 채택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 합병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북한 영역안에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을 실험해 보는 것으로서, 행정체계나 법제도, 경제사회적 제반여건의 개선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합병방식은 서방측의 투자의욕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조총련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교포들의 대북투자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²⁵⁾ 이에 따라 북한은 그 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보완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북한이 채택한 전략은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의 제정과 이를 통한 투자유형의 다양화 및 북한체제에 대하여 경제외적인 부담이 적은 투자유형으로의 유인, 그리고 외국인투자 관련법제의 대폭적인 보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주요유형인 합병법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1992년 합병법시행세칙을 개정하였고, 그 후 1994년 1월 합병법을 개정하였다.²⁶⁾ 앞으로 합병법의 운영방향은 서방측 투자가 특히 우리의 기업이나 개인과의 합병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으로 국한시키려 할 것이고, 조총련계 등 친북한 해외교포와의 합병은 종전대로 지역에 관계없이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²⁷⁾ 동법은 총 5장 4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주요내용

1) 기본원칙

합병법에서는 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제1조), 시행세칙에서는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의한 합병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이란 합병당사자가 대내외적으로 평등한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상호신뢰에 따른 평등한 부담을 지며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합병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제6조), 합병기업은 모든 활동에서 북한의 법규범과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시행세칙 제9조).

2) 합병당사자

북한측 당사자로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있고, 외국측 당사자로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있다. 그리고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과도 합병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제2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들과의 합병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등 우대조치를 인정한다(제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한 민법상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것으로 보이나, 민법에서 이의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북한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개념을 법률에서 그대로

24) 1984년 합병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북한의 합병법제, 법제자료 160집(1992) 참조.

25) 윤기관, 남북교류의 실적평가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1991), 90면.

26) 북한에서는 모법과 시행세칙간의 관계가 반드시 상, 하위법의 관계라든지 시행세칙은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등 우리 법제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7)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34면.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한에 사실상 존재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측 당사자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과의 합병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²⁸⁾ 그리고 우리기업 및 개인의 대북투자가 허용된다면 당연히 합병법상의 우대조치를 받게 될 것인바, 그 내용은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등이 될 것이다. 이는 당해 합병기업의 투자업종이 장려대상업종이 아니거나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아닌 지역에 투자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하다.

3) 합병대상

합병법에서는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시행세칙에서는 합병기업은 현대적 설비와 최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 등을 최소한 적게 들이면서 세계적 수준의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을 늘리며 최단기간안에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4조), 선진기술 도입과 수출증대, 투자효과의 조기달성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북한 영역안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과 동식물, 자연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합병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고 하여 공해산업을 배제하고 있다(제5조). 한편 장려부문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 건설대상,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대상 들에 대한 합병을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3조). 그리고 이들 장려부문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유리한 토지이용 조건의 제공 등 우대를 하도록 하고, 동시에 해외교포가 투자한 합병기업 내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합병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합병장려대상에 대해서는 그 밖에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이나 토지임대법 등에서 정한 장려조치가 적용된다.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한 합병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이 적용된다. 이와같은 조치는 합병기업을 업종별로 선별함과 동시에 해외교포들을 중심으로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되, 합병기업의 창설에 따른 경제외적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적인 제한을 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4) 합병기업의 법적지위

합병당사자는 합병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채무에 대하여 자기 출자액안에서 만 책임을 진다(제4조). 합병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며(제5조),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북한의 법인으로 된다(제6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 북한의 법인으로 규정된 합병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그러나 합병기업의 북한측 투자가는 사적소유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측 투자지분의 소유권은 국가소유내지 협동단체소유 등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합병기업에 대한 소유권 인정은 합병기업 자신이 대외적인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고, 소유재산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5) 설립절차

합병을 하려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사전에 합의하

28) 위의 책, 38면.

여야 한다(제9조). 관계기관과의 사전합의가 끝나면 북한측 및 외국측 당사자는 합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사본, 경제기술자산서 등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 신청문건을 제출하고, 이들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9조). 합영계약서 및 기본규약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4조).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업등록일이 합영기업 창설일이 된다(제10조).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0조). 합영기업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얻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지사를 설치할 수 있다(제13조). 경영활동은 승인된 업종의 범위안에서만 가능하고,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25조), 존속기간의 연장시에는 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제45조).

6) 출자

합영기업에 대한 출자총액과 양측 당사자의 출자지분은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출자총액과 출자지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측 당사자는 50 %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²⁹⁾

합영당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토지이용권 등으로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가액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제11조). 합영당사자의 출자지분 처분과 관련해서는 출자지분의 상속 및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나(제12조), 시행세칙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내지 우선매수권을 규정하고 있다(제38조). 합영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안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창설 승인기관의 허가를 얻어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4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투자규모에 따라 총투자액의 30 %내지 70 %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자본은 감소할 수 없으나 증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업창설 승인기관과 합의한 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5조).³⁰⁾

7) 내부조직

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나, 그 조직은 다소 특이하다. 합영기업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합영기업의 기본규약을 수정, 보충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활동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제16조, 제17조). 또한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 정형을 일상적으로 검열하며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9조).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 등을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8조). 그 밖에 합영기업 조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사회의 구성은 3인 이상의 인원으로 하되, 합영당사자들이 선출하는 이사의 수와 이사장, 부이사장은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계약과 회사규약에서 정한다(제39조).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5년이며, 필요한 경우 합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임기전에 교체할 수 있고 교체된 자의 임기는 전임

29) 김 진,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서울대 법학 31권 1,2호(1990), 138면 ; 윤대성, 앞의 논문, 289면.

30) 이처럼 자본감소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보다 외국투자자에게 불리하다(배종열, 북한 외자 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정책방향, 수은조사월보 12권 3호(1993), 27면).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40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이사회장이 소집하고 사전에 날짜와 장소, 토의안건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가능하다(제41조). 회사규약의 채택 및 수정과 보충, 출자총액의 추가와 양도, 회사기업의 중지 및 해산, 이사장/부이사장/이사/사장/부사장/재정검열원/청산인의 임명 및 해임, 결산과 분배문제 등은 이사회에 참가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³¹⁾ 이사회 의결방식은 거수표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서면이나 투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제44조). 이사장과 사장은 각각 다른 당사자측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 구성원들은 필요시 관리성원의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또한 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당사자나 그가 위임한 임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47조).

8) 경영활동

합영기업은 기본규약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관리, 운영된다(제20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안에 조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창설 승인기관에 신청하여 조업기일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21조). 조업개시일은 영업허가증서를 발급받은 날이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받기 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제22조). 또한 합영기업은 승인받은 업종의 범위내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업종을 확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5조).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내에서 구입하거나 생산제품을 북한내에서 팔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내에 연간 물자구입 및 제품판매 계획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3조). 동시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거나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승인만을 받으면 된다(제24조).³²⁾ 그 밖에 시행세칙에서는 합영기업의 수출입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재규정과 제품검사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제60조 내지 제62조).

9) 고용관계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북한의 노동력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성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제26조). 합영기업은 북한의 노동법과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에 따라 노동력을 관리, 이용하여야 한다(제27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결성할 수 있고,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제32조). 그 밖에 시행세칙에서는 고용관계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합영기업이 북한주민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노동행정기관을 통하여야 하며, 노동행정기관은 합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제64조). 이는 종업원의 채용과 해고가 북한의 노동력관리체계에 따를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합영기업의 사장은 고용관계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상대측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미리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65조). 외국인 종업원의 고용은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66조). 종업원들의 근로조건은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야 하며(제68조), 합영기업은 이들의 기술습득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제69조). 그 밖에 시행세칙에서는 종업원들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과 사회보험료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제70조 내지 제

31) 개정합영법에서는 합영기업의 관리성원의 명칭을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부기성원으로 각각 표현하여 구합영법상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

3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도 북한과의 교역을 수출입으로 보지 않고 반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71조).

10) 재정관리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북한은행에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계좌를 둘 수 있다(제28조).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북한은행 또는 외국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제29조). 외화관리에 관해서는 외화관리법이 따로 제정되었고, 외국투자은행법의 제정으로 합영형태의 은행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합영기업의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북한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제30조). 재정부기계산규범이란 합영회사재정부기계산규정 및 그 세칙을 말한다.³³⁾ 합영기업이 보험가입을 원할 때에는 북한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제31조).³⁴⁾

11) 결산

합영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결산은 다음 해 2월안으로 하여야 한다(제33조). 합영기업의 결산방법은 총수입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노력비, 감가상각비,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등을 포함한 원가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이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제34조).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의 25%까지 매년 결산이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의 용도는 합영기업의 결손을 메꾸는 이외에 등록자본을 증가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제35조). 합영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급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등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종류와 규모, 이용대상과 범위는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다(제36조). 이윤분배는 합영기업의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이 검열하고 이사회에서 비준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결산이윤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기금을 공제한 후 출자자분에 따라 합영당사자들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제37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는 이윤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제38조). 합영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이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상기간은 연속하여 4년 이상으로 할 수는 없다(제39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창설 승인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0조). 외국측 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상당하는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제41조). 그 밖에 합영법에서는 외국측 당사자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분배받은 자금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42조), 과실송금 이외에 투자재원의 환수까지를 보장하고 있다.

12) 해산

합영기업의 해산사유는 존속기간의 만료, 지급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이행, 자연재해와 같은 사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제43조). 존속기간의 만료 이전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기업창설 승인기관의 허가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적인 해산은 금지된다. 기업창설 승인기관의 허

33)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64면.

34) 북한은 보험에 관하여 민법에서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존재여부나 보험제도의 운영능력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민법 제205조 이하 참조).

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각각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모든 거래업무를 종결짓고 청산을 완료한 다음 10일 안에 기업등록 취소절차를 밟아야 한다(제44조). 합영기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이사회에서 토의, 결정한 다음 기업창설 승인기관에 존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계산은 등록기관인 도(직할시)행정경제위원회나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에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45조).

13) 분쟁해결

외국인투자법과 동일하다(제47조). 그 밖에 상대측 당사자나 대리인은 합영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해 줄 것에 대하여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제46조, 시행세칙 제104조).

4. 외국인기업법

(1) 개관

외국인기업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극히 한정된 일부지역에만 외국인의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외자기업법이 중국 전역에서의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는 1993년 1월에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의하여 법적지위와 법률적용관계가 구체화되었으나, 지정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당국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나진, 선봉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만 허용되는 것으로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주된 적용대상이 된다. 외국인기업법은 총 4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1994년 3월 제정된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은 외국인기업법과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 구체화하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이 시행규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자유경제무역지대로의 집중적인 투자유치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1) 기본원칙

동법에서는 외국인기업을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창설, 운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외국투자자의 범위를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외국인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제6조). 투자대상분야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이다. 다만,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의 창설은 금지된다(제3조).³⁵⁾ 외국인기업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법과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외국투자자는 북한의 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제5조).

35) 이는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규정에서는 투자대상분야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내지 제10조 참조).

2) 설립절차

외국인기업의 설립절차는 크게 나누어, ① 기업창설 사전교섭 ② 기업창설신청 ③ 창설 승인 ④ 기업등록 및 세무등록으로 되어 있다. 세무등록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측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세무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업창설일은 기업등록일이 된다(제9조). 외국인기업법은 기업창설 승인후의 투자이행 여부에 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외국투자가는 승인받은 기간 안에 투자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외국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원 대외경제기관은 이미 승인한 외국인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한편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건설을 북한의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제11조), 이는 북한 민법 제117조 내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의 건설기관과 기본건설시공계약울 체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³⁶⁾ 지사 등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회사의 설립에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법의 경우와 같다(제10조, 시행규정 제23조).

3) 투자절차

외국인기업은 총투자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총투자액은 외국인기업의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총액을 말하며, 등록자본은 총투자액 가운데 지대당국에 등록된 자본의 총액을 말한다(시행규정 제25조). 등록자본의 규모는 총투자액에 따라 일부는 정액으로, 일부는 비율로 정해진다(시행규정 제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증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감소할 수는 없으며, 등록자본의 증가 또는 양도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과 지대당국에의 변경등록이 요구된다(시행규정 제27조). 투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의 가격은 외국투자가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정 제28조). 투자하는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 등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시행규정 제29조). 외국투자가는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자본을 투자하여야 한다. 즉, 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여러번에 나누어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하되 제1회의 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자본의 1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며, 다음 투자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에 기재된 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기업 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시행규정 제31조).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투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으로부터 투자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정 제3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부구조 건설대상에 대해서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전액을, 그 밖의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세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재투자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이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소득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33조).

4) 경영활동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제한된 지역이기는 하나 북한내에서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에 의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외국인기업법에서는 감독을 강화

36) 북한 민법상의 계약제도에 관해서는 홍천용, 북한의 경제관련법상의 계약제도, 경남법학 제9집(1993), 222면 이하 참조.

하고 있다.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개시시점은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이다(시행규정 제35조). 외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규약의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제14조). 또한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제품은 수출하거나 북한내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제16조). 수출입의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25조). 다만, 외국인기업이 북한의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제품을 북한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야 하며(제17조), 북한의 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물자를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거나 생산제품을 상업망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정 제37조, 다만 사무용품과 경영용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 외국인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을 북한의 해당 무역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시행규정 제39조). 수출입상품의 가격은 해당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지대안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지대밖의 북한 영역안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가격과 지대안에서 판매하는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외국인기업은 탈세를 목적으로 수출입상품의 가격을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없다(시행규정 제40조). 외국인기업은 수입한 물자의 보관 및 이용과 생산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사항을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록할 의무가 있다(시행규정 제41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계산을 북한원으로 하여야 하며, 외화로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 시기에 있어서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환율로 계산된 북한원을 접수기로 표시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43조). 외국인기업은 북한 무역은행에 계좌(원화계좌와 외화계좌)를 두어야 하며,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계좌를 둘 수 있다. 외화거래와 결제는 거래은행에 있는 자기 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은행에 계좌를 둔 경우에는 분기마다 수불정형과 거래은행의 계산서를 외화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44조).

5) 결산

외국인기업의 경우에는 북한측 당사자가 없으므로, 결산은 이윤분배와는 관련이 없고 조세부과 근거로써의 의미만을 갖는다.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야 한다(제19조). 외국인기업의 결산년도와 기금조성, 예비기금의 적립한도 및 용도 등은 합영기업의 경우와 같다(시행규정 제45조, 제47조). 외국인기업은 분기 및 연간 재정부기결산을 하여야 하며, 분기의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분기 다음 달 15일 안으로, 연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심사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8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재정부기결산서와 고정재산문건은 기업의 경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51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무정형을 검열, 감독할 수 있다(제27조).

6) 고용관계 등

외국인기업은 기업소재지의 노력알선기관과 맺은 노력채용계약에 따라 기업운영과 관련된 노동력을 북한주민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공의 기술자, 기능공은 다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제20조, 시행규정 제53조, 제54조). 북한주민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려고 할

경우에는 노력알선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55조). 그러므로 외국인기업의 경우 물적 요소는 외국투자가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아래 조달, 활용할 수 있지만, 인적 요소의 조달에는 행정당국의 간섭을 받게 된다.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노임기준은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시행규정 제56조, 제57조). 다음 직업동맹조직의 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바, 직업동맹조직은 북한의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1조). 그러나 ① 직업동맹은 북한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서 종업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 결사의 성격을 찾아보기 어렵고 ② 합작기업에 대해서는 직업동맹에 관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않으면서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③ 직업동맹조직의 기능 중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독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국제노동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³⁷⁾

보험가입에 관해서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북한의 보험에 들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외국인기업의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내국세의 경우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라야 하고(제24조, 시행규정 제46조), 관세의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 오거나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에는 관세가 면제된다(제25조).

7) 해산과 분쟁해결

외국인기업의 소멸사유는 해산과 파산이며(제30조 참조), 해산사유로는 존속기간의 만료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산명령이 있다(제28조, 제29조). 외국투자가가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영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전에 심사승인기관인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경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8조, 시행규정 제64조). 외국인기업의 경영기간은 기업등록증이 발급된 날부터 계산한다(시행규정 제63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해산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해산일은 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다(시행규정 제67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업해산을 공시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규정 제68조). 또한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절차가 끝나기 이전에는 입의로 처분할 수 없다(제30조). 그 밖에 외국인기업법에서는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독권행사를 위하여 강력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기업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정상에 따라 기업활동의 중지, 해산 또는 벌금을 명할 수 있다(제29조). 분쟁해결은 합작법의 경우와 같고(제31조), 시행규정에서는 우리의 행정심판과 유사한 신소청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80조).

37)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95면.

IV. 北韓의 外國人투자관계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문제점

법제적인 측면에서 北韓의 外國人투자관계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³⁸⁾

(1) 北韓의 外國人투자관계법은 전반적인 법령체계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점이 많고, 특히 그들이 참고로 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와 비교해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³⁹⁾ 이는 北韓이 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 이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外國人투자관계법의 상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법에 해당하는 外國人투자법과 각 개별법간의 관계가 애매하고 규정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흠결된 부분이 많은 반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같은 현상은 입법경험의 부족과 이로 인한 입법기술상의 미숙함, 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⁴⁰⁾

(2) 합작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北韓은 합영기업이나 外國人기업에 의한 투자를 제한하고 합작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정책을 펴고 있다. 합작기업은 北韓측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심끝에 장안한 제도로서, 外國투자가도 직접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면도 있으나, ① 경영성과의 평가에도 外國투자가측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外國투자가는 北韓측이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이윤확보에 무관심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고, 경영성과의 평가나 이윤분배가 잘못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② 이윤분배는 물론 투자상환까지도 생산제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外國투자가측은 이를 판매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北韓측이 제품의 품질, 수량, 납기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北韓측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北韓 정부의 승인을 얻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사실을 인정받는 것부터가 문제될 수 있으며 ③ 外國기자재의 수입이나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 매월 단위로 경영결산을 보고하게 한 것 등 당국의 통제가 과도하고 승인절차, 요건 등에 관해서도 명시된 바 없어 자의적인 집행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3)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기업도 北韓에 투자할 수 있음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北韓은 이에 관하여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측에 대한 별도의 투자장려규정의 제정 등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점도 중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미흡한 점이다.

(4) 그 밖에 세부적인 측면에서, ① 北韓에도 과학기술법, 발명및창의고안에관한규정, 과학기술성과의심의등록및도입에관한규정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쳐서 방측의 선진기술이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렵고 ② 토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불명확하여 합영기업의 경우 출자지분의 과다계산, 外國人기업의 경우 토지임차료 과다부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③ 기업회계제도가 불명확하여 경영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이윤분배에서 外國투자가가 부당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④ 환경규제기준이 불명확하여 투자업종의 선정 및 기업활동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⑤ 北韓의 보험제도가 미비하고 보험관리기법이나 지급능력 등에 의문이 있음에도 北韓의 보험기관에만 가입하도록

38) 위의 책, 228 - 229면.

39) 김 진, 앞의 논문, 148 - 149면.

40) 최종고, 앞의 논문, 24 - 25면.

하여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⁴¹⁾ ⑥ 분쟁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북한의 관련법규가 미비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⁴²⁾

2. 대응방안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을 남북경협과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1) 북한법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따라 관련법령 및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⁴³⁾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야 한다.

(2) 대북투자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각종의 투자관련협정, 예컨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중재협정 등이 하루 빨리 체결되어야 한다.⁴⁴⁾ 이에 관해서도 남북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위하여 남북한간에 필요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우리측의 대북투자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우리 기업이 상대하여야 할 대상은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 당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북투자자의 승인절차를 개선하고 세제지원과 투자손실의 보전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간의 교역 및 투자에 부수되는 거래가 WTO 체제 출범시 내국간거래로 간주되어 무관세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끝으로 투자유형별로 표준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⁴⁵⁾

V. 결 론

북한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관련법규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은 최근의 여러 입법을 통하여 상당히 체계화, 구체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은 입법목적만이 앞설 뿐, 이들 법규는 여러가지 점에서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외국자본의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관계법의

41) 북한의 보험제도에 대한 소개로는 고평석, 북한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대한 위험담보제도, 경남법학 제9집(1993), 313면 이하 참조.

42) 북한은 우리나라가 1973년에 가입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김진, 앞의 논문, 150면).

43) 동 합의서 제1조 11항에서는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4) 윤대성, 앞의 논문, 305면.

45) 북한도 합영계약서 표준양식을 만들어 활용한 바 있다(위의 논문, 305면).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완비하고, 동시에 기존의 법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남북경협 논의를 계기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북한법 연구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북한법에 대한 연구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극히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투자관계법이 전체 북한법 체계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법률용어의 의미 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민법을 비롯한 북한법의 전반적인 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북한법제분석 94-1(1994)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기업의 대중국합영,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구보고 93-3 (1993)
 윤대규, 북한의 경제정책과 법제의 변화, 경남법학 제9집(1993),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종상, 북한헌법상의 경제조항, 경남법학 제9집(1993),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진기, 북한 경제법의 발전 및 체계, 경남법학 제9집(1993),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천용, 북한의 경제관련법상의 계약제도, 경남법학 제9집(1993),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윤대성,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법제도, 경남법학 제9집(1993),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고평석, 북한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대한 위험담보제도, 경남법학 제9집(1993), 경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제처, 북한의 합영법제, 법제자료 160집(1992)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법제자료 157집(1991)
 통일원,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1993)
 김 진,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서울대 법학 31권 1,2호(1990)
 이기수, 북한의 합영법, 북한법률행정논총 7집(1989), 고려대 법학연구소
 제성호,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분석 및 평가, 통일연구논총 2권(1993), 민족통일연구원
 배종열, 북한 외자법령의 정비에 따른 우리의 대북투자정책방향, 수은조사월보 12권 3호 (1993), 한국수출입은행
 배종열, 북한의 합영법시행세칙 개정과 우리의 대응방향, 수은조사월보 12권 5호(1993), 한국 수출입은행
 권오승,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북한연구 1993년 겨울호, 대륙연구소
 최종고, 북한법의 최근동향과 특징, 북한연구 1993년 겨울호, 대륙연구소
 윤기관, 남북교류의 실적평가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 4호(1991), 통일원